

# 한국특허제도사와 발명장려운동(2)

이 글은 1988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한국특허제도사* 중의 한부분으로서 88년도에 나온 글을 뒤늦게 게재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거제년도가 틀리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뀔리 없다는 생각과 특허출원 20만건 돌파라는 산미원을 세운 우리 특허토양에서 뿌리는 어느정도 튼튼히 박혀 있는지, 발명장려를 위한 운동은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효과는 어느정도였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한국특허제도의 연명기와 발명장려운동*을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한국특허령과 통감부

**우** 리나라의 구한국시대에 있어서 근대적 특허제도에 관한 기록을 얻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탐색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몇가지 중에서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 196호 「한국특허령」이란 것이 있었다. 이 칙령 196호는 한동안 그

정체를 잘못 인식시켜 왔던 것이라고 본다.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한국특허령은 대한제국시대의 한국칙령으로 잘못 알려져 한국 특허제도의 창시가 바로 이 칙령에서 였다고 인식되어 왔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모르지만 8·15 해방후에는 대개 그렇게 알고 한국 특허제도에 대한 기록들

을 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측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어딘가에 남겼을 적에 그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후는 계속 그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자료로서도 인용하게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특허제도사를 한번 정리한다고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럴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 자료의 출처와 그 근거를 일단은 추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어떤 자료가 그 역사의 어느 부분에서 주와 객을 가려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할적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하여 칙령 제 196호의 출처와 근거를 찾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관보 등에 게재된 한국정부의 법령들 중에서 칙령은 100호를 넘지 않고 있었다. 어찌하였던 이

196호의 법령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이 칙령은 일본 통관부공보에서 그 전부를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공보의 원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시중 출판사에서 이를 영인 간행한 것은 1974년이었으나 널리 알려져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이 일본의 법령들은 칙령 제 196호 한국특허령을 비롯해서 197호 198호로 이어지는 한국의장령 한국상표령 등등 분명 일본의 칙령이었다. 이 칙령 196호의 허두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朕이 韓國特許令을 裁可하  
여茲에 이를 公布한다.

御名 御璽  
明治四十一年八月十二日  
内閣總理大臣侯爵桂太郎  
外務大臣子爵寺内正毅  
勅令第196號  
韓國特許令  
第一條 韓國에 있어서 特許에  
關하는 …

이 칙령 196호의 허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칙령은 한국특허령이 전문 5개조이며 한국의장령이 6개조, 한국상표령이 7개조 한국상호령

이 4개조 한국저작권령이 4개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소위 이 칙령들은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된다. 이 칙령들이 갖는 의미나 내용들을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일본의 특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행 일본의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제법령을 있는 그대로 한국에 적용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그 법령상의 명칭의 해석과 시행절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법을 한국에 적용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앞선 절차적 법령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칙령들은 특허에 관한 일본의 제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조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 용어의 해석과 용례를 설명한 법령인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부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각법령에 “제국”이라 기록된 용어는 “한국”으로 이해할 것이며 “특허국”이라 함은 통감부 “특허국”으로 “구재판소”라 함은 통감부 소속의 “이사청”으로 “대심원”이라 함은 “이사청” 및 통감부 “법무원”에 해당한다는 등의 법문상

의 명칭의 해석이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는 한일 양국민은 발명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등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국에 있어서 미 국인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미일간에 맺은 조약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미일간의 조약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 논하기로 하고, 그다음의 이야기는 이 특허제도는 190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 것들이다. 이것이 한국특허령등이 갖는 의미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이 이 시점에서 자기네 특허제도를 한국에 실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1908년경의 한국정정을 한번 돌아보면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 기세를 우리는 감안할 수가 있다. 그로부터 10년전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을 물리친 승세와 러일전에서의 결과로 이제야 말로 그들은 마음놓고 한국침략의 꿈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리하여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어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동시에 한국에 통감을 두어 한국정부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는 가운데 1908년 한국특허령이 나오게 된 것이며 이때를 전후한 한국정부의 각료들 중에는 이완용을 중심으로 박제돈 고영희, 안병준, 조중응 등 반민족적 친일자들이 대신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 가며 차지하고 있었고 통감 이등박문은 이들 한국 각료들 위에 군림하여 정기적으로 각의를 열고 이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내정외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식민시책을 하나 하나 펴나가며 합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기네의 특허제도를 한국에 연장실시하려 하였는가. 한국에는 1876년 개항 아래 외국상품이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홀려 들어오기 시작하여 1908년쯤 되어서는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개항과 더불어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거류민도 이때쯤은 상당수로 증가하여 있었던 것이다. 1876년 개항 당시 일본인 거류민수는 54명이던 것이 1896년에 와

서는 12,300명, 1908년에 와서는 126,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을사조약을 맺은 1905년의 42,400명보다 불과 3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나 있다. 이를 일본인은 주로 상인들과 또는 관료들로서 항구나 대도시에 정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일본인 거류민들은 우리나라에 공업소유권제도가 없고 따라서 국가간에 이에 대한 조약등이 없는 것을 틈타서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한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자 일본 본국의 특허권자들은 1906년 11월과 190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특허대회를 열고 자기들의 특허권이 한국에서 침해받고 있다하여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이때에 이 문제 외에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에 있었으며, 그들은 일본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그네들의 특허권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미

국이 한국정부를 제쳐놓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와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을사조약 후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에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한 글의 일부를 소개하면 「...한국인은 아직 타인의 출판이나 발명을 도용하고 상표를 위조하는 것과같은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일본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기위조하는 행위가 빈번한데 이때에 이를 단속할 법적 방법이 없으니...」라고 일본당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인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을 한국에서 일본법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의 일부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여 왔던 것이다. 이 제의를 일본정부는 수락하고 또한 통감이 이를 동의함으로서 이 교섭이 타결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일은 1908년 5월 19일 한국에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미일조약이 조인되고 동 8월 6일 비준서가 교환되었으며 8월 12일 이를 공포하는 동시에 같

은 날짜로 한국특허령등을 일본 칙령으로 공포하였던 것이다. 그는 동시에 통감부는 전기 미일조약의 성립과 상기한 한국특허령등이 공포되었음을 한국정부에 통고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고시 제 3호로 미일조약을 고시하고 제 4호로서 한국특허령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둘러싼 일본 특허권자들의 문제와 미국인의 특허권 보호에 따르는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된 것이며 동 8월 16일부터 이 일본의 특허제도가 한국에서 일본통감부 특허국에 의해 실시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게 된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건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건 간에 일본 식민통치기구인 통감부에 의해 특허국이 설치된 이후 그로부터 소위 한일합방 때까지 만 2년간 실시된 것만은 사실이다. 일본의 이 제도의 시행은 형식상으로는 일본 본국의 특허행정에서 독립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본 특허행정의 한국 연장이며 그 출장소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

통감부의 특허사무에 대하여는 우려할 근거도 권한도 없는 괴안의 것에 불과하였다.

어찌하였던 이 제도는 1908년 8월 16일에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실시되었던 것이며 그 시행의 실적을 당시 통감부 공보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거기에 출원 등록된 사람의 거의가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이고 한국인은 몇 사람이 끼어 있을 정도이고 그 등록된 종목의 내용도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별표에서 보이는 한국인의 발명특허는 2건이 있는데 2건 모두 정인호란 사람의 말총모자(준모자·등록번호 133호)란 것이다. 이 말총모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한번 등록이 되고 얼마 후 같은 정인호의 말총모자가 다시 등록된 것은 본래의 것을 좀 변

형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표의 경우도 한국인이 등록한 것은 20여건이 되지만 그 종목의 내용은 일본인이나 미국인의 것은 직물류, 화학제품류, 기계류, 양약제품류 등 공장제 상품인데 비해 한국인의 것은 환약, 산약 등 한약제제와 지권연초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수공업적 상품에 불과한 것들이다. 생각하건대 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현실은 그들과는 견줄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때에도 아직 전근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을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 오직 민족의 지도자들의 외로운 외침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반국민의 생활이나 사고는 봉건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 통감부특허국 등록건수 표

1908. 8. 16~1910. 7. 30

국 별	특 허	의 장	상 표	실용신안	합 계
한국인	2	.	24	.	26
미국인	24	.	107	2	133
일본인	249	40	378	19	686
계	275	40	509	21	845

는 암담 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두운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길은 오직 근대를 향한 국민교육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1880년대 이후에야 비로서 신식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 세운 근대학교는 1886년에 설립한 육영공원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초기의 근대학교운영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보인다. 관립의 육영공원은 3년제 중학과정의 학교였으나 학생모집이나 교사를 고용하는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만 것 같다. 그러나 선교계의 학교는 학생모집에도 난관이 많았지만 그들의 인내와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반의 신뢰를 얻게 되고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원산, 목포, 개성 등 지방도시에도 학교를 설립하여 이나라 근대교육의 선구자로서 그 공적은 참으로 혁혁한 바가 있다.

그후 정부에서는 1895년에 소학교령을 내리고 서울에 처음으로 매동, 정동, 계동, 세동 소

학교를 세우고 같은 해에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899년에 와서 한성중학교(경기고)를 설립하게 된다. 그후 민족지도자들의 자각적 교육운동이 활발하여 1905년 이후 불과 몇년 사이에 양정, 중앙, 휘문, 보성, 중동학교가 설립되고 진명, 숙명 등 여학교와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교육운동으로 실력을 길러 국운은 개척하고 근대사회로의 길을 찾고자 열의를 다하고 있었지만 러일전쟁 이후의 국가의 운명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들고 있었다. 국체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다한 한국의 왕실과 애국지사들의 신명을 다한 구국운동도 악육강식이란 당시의 강자의 논리에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급기야 1910년 8월 29일을 기하여 일본은 교묘하고 악랄한 책략과 음모로서 합병이란 이름으로 한국병합조약이란 것이 비밀리에 양측 전권위원 이완용과 사내정의에 의해 조인이 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들은 이 무법무도한 조약을 억압으로 맺어 놓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8월 29일부로 무수한 법령을 쏟아 놓는다. 그 가운데

하나가 특허관계에서의 칙령 321호를 발하여 통감부 특허국 관제를 폐지한다고 하고, 칙령 335호로는 일본의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칙령 336호의 제2조에서는 한국특허령, 한국의장령, 한국실용신안령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은 일본의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동 제7조에서는 한국특허령, 한국의장령, 한국실용신안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칙령 337호와 338호에서는 한국상표령과 한국저작권령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상기 336호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칙령 339호에서는 한국특허변리사령에 의한 등록은 특허변리사령에 의한 등록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구구하게 언급한 것들은 그들의 「한국병합」이란 상황변화에 따른 특허관계법등의 법률적 조치라 하겠다.

이리하여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고 통감부 대신 조선총독부란 것이 설치된다. 이후 모든 통치적 권한을 걸어쥔 총독이 통치행사를 하였지만 유독 특

허행정만은 일본 본국정부에 속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외교권이 총독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까닭에서라고 보는 것이다. 즉 특허제도의 속성은 국제조약 또는 협약 등 외교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외교권을 행사하는 그가 속한 그 나라 중앙정부에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허에 관한 사무는 일본 정부 농상무성 특허국에서 직접 취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치하의 긴 울분의 세월을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多方면으로 민족운동을 벌려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국민 교육의 수준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문화·과학운동 등을 통하여 민족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1924년 10월에 와서 박길용, 배상언, 박장열, 유전, 김용관, 윤성순, 이용훈 등 발명계 인사들이 발명학회를 조직하여 과학지식의 보급과 발명사상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벌려왔다. 이 발명학회는 1933년에 와서는 그 진용을 새로이 정비하고 또한 「과학조선」이란 과학잡지를 발간하여 우리 국민의 발명 과학지식을 고양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

었다. 이 「과학조선」의 창간 당시의 발명학회와 과학조선사의 임원에는 고문, 이사등으로 현상윤, 서춘, 김동성, 주요한, 이은상, 박길용, 김용관, 김창제, 신봉조, 이춘호, 문일평, 현득영 등 저명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이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1934년에는 4월 19일을 제1회 「과학데이」로 정하고 이를 전후하여 연 3일간 신문, 라디오,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에 파급되는 대대적인 행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 행사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국내의 지도층, 지식인, 과학자를 총망라한 저명인사 120여명의 발기로 같은해 7월 5일에 「과학지식보급회」라는 거족적 단체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 조직은 회장 윤치호, 부회장 이인, 고문, 이사, 각분과 위원 등 임원진에는 조만식, 송진우, 여운형, 김성수, 방응모, 이상협, 김창제, 유억겸, 최규동, 윤일선, 김활란, 이훈구, 안동혁, 정문기, 이가윤, 이현구, 이채호, 조동식, 김병하 등 90여명이 참가하여 이는 과학운동이라기 보다는 민족의 단결을 과시하고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운

동과 과학데이 행사는 지방조직으로까지 확산되어 갔으나 1932년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과학데이 행사마저 폐지되고 만다. 과학데이를 4월 19일로 정한 이유는, 유명한 과학자 따위의 서거일이 1882년 4월 19일이어서 그날을 택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급기야 1937년에 중일 전쟁을 도발하고 이 전쟁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면서 일제의 탄압과 약탈은 더욱 가혹하여지고 나아가 한민족 밀살정책은 가히 우리 민족을 窫息상태로 몰고 갔으며, 그러는 가운데 종전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된다.

우리 특허사를 더듬어 보기 위해 그 여명기로 상정되는 조선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본 것이 지석영 시무소의 내용이었다. 돌아켜 보면 우리 특허사의 맥의 부침이 우리 현대사와도 같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8·15 광복후 조국의 독립과 더불어 성장발전하여 온 오늘의 한국공업소유권제도는 대한민국의 그칠 줄 모르는 무서운 속도의 발전상과 그 보조를 같이 하여 세계 속의 핵의 위치를 향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나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별록9602**